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

제1조 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의 낚시어선업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제8호의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(이하"낚시어선업자"라 한다)와 선원 및 낚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 (영업시간) ① 어선검사증서에 "야간항해가 금지됨"으로 표시된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30분후까지로 한다

② 그 외의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03:00~22:00까지로 한다.

제4조 (영업구역의 제한)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,「해사안전법」,「항만법」,「개항질서법」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
- 2. 「문화재보호법」, 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보호구역
- ② 낚시어선업자는 관내 무인도서 및 갯바위(간출암 포함)등으로부터 50m이내 해역에 낚시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안내할 수 있는 도서에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이 낚시장소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낚시 어선업자가 야영할 수 있는 지정된 도서에 낚시어선을 야영장 주변에 대기시키고 승객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(낚시어선업자 및 **승객의 준수사항**)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,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2. 낚시어선업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,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4.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 (선주·선원의 전화번호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)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 하여야 한다.
- 5. 낚시어선업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, 경찰관서, 군부대,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6.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·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(수역·육역)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명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7.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 및 선내에 이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8.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9.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10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,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.

- ②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 - 2.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 금지 체장(체중)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 - 3.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4. 승객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가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나.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- 다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- 라. 영업시간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- 마.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취사,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 - 5.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한다.
 - 6. 승객을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.
 - 7. 승객은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.
 - 8.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 (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)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의 시행 전 「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 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」(무안군 고시 제2013-59호, 2013. 7. 3)은 폐지한다.

[별표]

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

1. 게시판의 제작기준

가. 재질 :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

나. 색상

1) 글씨 : 검은색

2) 바탕 :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- 흰색

승객 준수사항 - 노란색

다.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: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,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아래 (게시방법의 예시)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

2. 게시판의 부착장소

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

3. 게시방법의 예시

승객 준수사항

- 1.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2.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.
- 3.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.
- 4.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 - 가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- 나.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- 다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- 라. 영업시간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- 마.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.취사.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- 5.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.
- 6. 승객을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합니다.
- 7.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.
- 8.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 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.